

# 서울특별시 강서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 순 효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0-28
----------	---------

발의연월일: 2020년 4월 일

발 의 자: 송순효, 김현희, 박주선, 정정희  
박성호, 송영섭, 이충현, 황동현  
강선영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서구민 중 비문해자에 대한 문해교육 시행 근거 마련을 통하여 구민의 학습권 보장과 함께 평생교육 증진을 목적으로 함.

## 3. 주요내용

가. 구민에 대한 학습권보장과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되는 비문해자, 문자해득교육,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문해교육의 대상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라. 문해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4조)

- 마. 문해교육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바.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사업 추진을 규정함.(안 제6조)
- 사. 문해교육 사업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아. 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및 단체, 개인에 대한 표창을 규정함.  
(안 제8조)
- 자. 시행규칙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9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교육기본법」 제3조, 제4조, 제10조
- 2) 「평생교육법」 제5조, 제39조

나. 협조부서: 교육청소년과

다. 입법예고: 2020. 4. 14. ~ 2020. 4. 19. 결과: 의견 없음

## 서울특별시 강서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3조, 제4조, 제10조 및 「평생교육법」 제5조, 제39조에 따라 비문해자에 대한 문자해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습권 보장과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 등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
2.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추 수 있도록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3.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문해교육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비문해자로 한다.

제4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문해교육은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 받는다.

② 문해교육은 대상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문해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문해교육 교육과정 홍보 및 교육자료 보급
2. 문해교육 단체의 지원·육성
3. 문해교육 관련 기관과의 협력
4. 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교육 행사 개최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사항

제6조(유관기관과의 협조) 구청장은 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문해교육 사업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 이용을 허가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표창) 구청장은 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게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